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10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2. 3. 4. 접수 제145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85085호 보증채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5. 'C은 2억 1,3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에게 74,718,272원 및 위 돈 중 70,366,393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3.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4. 29.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20. 12. 10.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2. 5. 17.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액수는 원금 22,554,09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107,039원 합계 32,661,133원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는 2022. 2. 6.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G가 있었다. 피고, C, G는 2022.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2.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인 각 2/7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은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2. 3. 4. 접수 제145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별지